



## 장애인 교육권의 위험 요인에 따른 개선 방안

이현수

---

---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교육권의 정당성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함이었으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법으로서 끝이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또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지원, 직업교육, 평생교육, 평가방법 개선, 실제적 개별화교육 운영,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개선과 교육지원, 부모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교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원만이 장애인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 넷째,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에서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개선과 교육환경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장애인, 교육권, 위험 요인, 교육권 개선 방안, 특수교육

---

---

### 1. 시작하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인의 교육도 비장애인과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런 가운데 인권사상이 차츰 성장하면서 장애인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교육 현장에도 파급되었고 미국의 전장애인교육법(The Act of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의 최소제한환경(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조항의 성립으로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군리가 확보되었다(박원희, 1999).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장애아동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일반학교 입학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이 입학과 전학에서 거절당하거나 전학을 강요받았으며(김주영, 2003), 이러한 어려움은 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 4월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특수교육 교육관계자들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고 2008년 5월에 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칭함)」 역시 2008년 4월 11일에 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적 지원방안과 차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교육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 장애인들이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내외에서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 교수-학습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에서 이러한 지원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련했다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인 시설·설비의 개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이미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의 정당성과 위험 요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장애인 교육권의 정당성과 위험 요인

### 1. 교육권의 개요

헌법 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성낙인, 2008:679).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기능.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

하고 문화 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기능. 셋째,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릴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능. 넷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제시하며 어떤 수준의 능력이라도 그 능력의 신장에 적합한 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다양한 요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2007년)」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을 제정하여 차별구조를 해결하고 교육 평등권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확대, 조기교육 기회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교육권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와 확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의 질제고, 차별금지 조항의 강화, 장애인 대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교육권의 정당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듯이 장애인의 교육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대학의 장이 정한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4호), 장애인(법 제2조 2항)이 교육기관(제3조 제6호, 시행령 제4조)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말하며,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법(제 3조 제7호)는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영역별로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투자과 교육설비, 교육과정, 보조원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교육권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될 수 있다(하철, 1997). 교육기관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그 범위는 아래 <표 1> 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

구분	2009년 4월 11일	2011년 4월 11일	2013년 4월 11일
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국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유치원	특수반설치 국 공립유치원	국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학교	국 공 사립 특수학교		
초중등교육기관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 각급학교	국 공 사립 각급학교	
고등교육기관		국 공 사립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그 외 1000㎡ 이상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은 2500㎡ 이상)
평가인정교육훈련시설			1000㎡ 이상의 학정인정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1000㎡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교육연수기관			교원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0)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편의」에서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관련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제14조 제1항 제1호),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시행령 제8조 제2호),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시행령 제8조 제3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참여관련」에서는 학습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학습 보조기기의 대여 및 보조견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의 확보(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시행령 제8조 제1호),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지원에 있어서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배치,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

동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은 학교에 입학시켜 교육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주었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영역과 정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교육설비,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평가방법, 보조교사지원 등의 방안을 개발 및 제공하여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특수교육 관련법에 따른 교육권

교육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장애인은 모든 교육환경에서 접근성 보장과 이러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유치원 과정(2010년 만5세, 2011 만4세, 2012 만3세)부터 고등학교(만17세)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였고, 장애인의 무상교육은 2010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입학절차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각 시·도·군 등의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의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안 되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편의제공,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합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장애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고,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지원과 보조인력 제공, 학습보장기자재 등의 설비 제공, 취학편의 제공, 기숙사 제공, 인터넷 등의 정보 접근 보장과 같은 관련서비스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을 위해 학교교육 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별도의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편의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 배제 등의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 조치를 통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 인력의 지원 등 기본적인 장애인 교육 환경의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인의 교육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교육은 무엇보다 의무가 아닌 권리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 4. 장애인 교육권의 위험 요인

장애인은 그동안 교육환경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장애인교육권연대, 2004).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영역에 있어 진정사건의 유형을 <표-2>에서 살펴보면, 시설물 접근 및 이용(16, 32.6%)과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13, 26.5%)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비해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영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차별금지 사업장 단계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 교육기관으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접근권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 접근 및 이용 부분에 있어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09년 교육영역에서 진정사건 유형

(단위: 건수→건, 비율→%)

구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08	합계	58	3	16	20	11	4	4	-
	비율	100	5.2	27.6	34.5	18.9	6.9	6.9	-
2009	합계	49	2	16	8	13	1	3	6
	비율	100	4.0	32.6	16.3	26.5	2.0	6.1	18.3
	공공	28	2	7	4	8	1	2	4
	민간	21	0	9	4	5	-	1	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0)

이 외에도 특수학교에서 과밀을 이유로 입학과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 일반학교 담임교사가 특수학교로 전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부모님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많아 한 학급 증설을 요

구했으나 거절하는 경우, ○○중학교 특수학급 신설은 교육청에서는 올해 신설된다고 했으나 결국 신설되지 않았고 일반학급으로 배정된 경우가 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과밀문제만 보더라도 교육환경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1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7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문제는 매우 시급, 자사고 입학 거부 의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법리해석이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통합 환경에서 장애인 이해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 이해교육 부족으로 장애인의 괴롭힘은 2010년도는 국가인권위원회(2010)에 114건의 진정이 제기되었으며, 2008년 81건에 비해 70%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차별 영역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치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28). 특히 일반학교의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장애인의 이해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부족으로 <사례 1>,<사례 2>와 같이 장애학생들이 가끔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다.

<사례 1>

○○중학교에서 정인지체 학생에게 방과 후 반 친구 2명에 의해 라이터로 머리를 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함(2008년 5월)

<사례2>

○○고등학교 1학년 정인지체 학생에게 또래 친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으나 대처를 안했음(2009년 10월).

일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편의 제공 문제에 있어 2009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경우가 많으며, 모든 건물을 불편 없이 접근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학교 내에 점자 유도블록 미설치, 건물 입구의 계단 대신 경사로, 우회 접근로 미설치, 교실 외에 접근 편의를 위한 자동문 미설치, 점자로 표시된 교실 이름 안내판 미설치, 교실 내에 휠체어 장애인 좌석 미 배치, 노트북이나 녹음기 등을 올려놓기에 충분한 넓이의 책상을 구비한 곳도 많지 않다.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점자 안내문 비치, 도서 검색을 위한 음성지원, 대인 서비스 지원, 대리 대출, 기간 연장 허용,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별도의 열람실 및 좌석 배치, 휠체어 사용 아동의 서고 출입 등). 장애인이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전산실(컴퓨터 실)을 이용의 불편함, 교실 손잡이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더라도 잘못 설치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수업환경에서 교수-학습 지원에 있어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차이에 대하여 비장애아동과 차이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황원영, 2003). 예를 들면, 수업장면에서 장애 영역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 영역과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지원의 문제, 시험 평가 기준이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 시험 답안지 작성의 문제, 수행 평가의 문제, 비장애인과 똑 같은 시험 시간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학습과제에 있어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제를 제시하거나 과제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 등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수화통역사나 속기사의 지원의 문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재 점역 지원이나 녹음 체제가 구비의 문제, 점자 프린터를 제공하거나 스크린 확대기 등 기자재 지원이 빈약하다. 이 외에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노트북 등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이 부족하고 대필 지원 도움 인력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이 필요시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장애인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 교사의 배치가 요구된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시행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은 총 5,497명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전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학업 능력의 하향평준화, 대학 생활의 부적응, 객관적 능력 평가의 기회 박탈, 특별전형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이현수, 2009:92-107).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서 다수의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특수한 구조는 늘 장애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동시에 사립대학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는 특별전형 제도는 장애 학생의 능력과 무관한 다양한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제도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또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학과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 당사자들의 협력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입학 후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와 물리적인 편의 제공, 교수-학습 지원, 생활 및 복지 지원,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 III.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 1. 장애인 지원의 법적 이행 근거 마련

장애인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이행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발판으로 장애인 지원체계의 필수 요건들을

해당 법령에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국민으로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에 대한 규정과 학교에서 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이념적 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은 이미 교육기본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3조, 13조, 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과 보조금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차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 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3조 6호). 제3조제6호에서 제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법률상에 명시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들의 피부에 닿는 교육지원 및 요건들은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즉,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할 노력이라든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이해와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장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체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강제화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 내 지원 방안

### 1) 물리적 편의제공 지원

우리나라의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평지보다는 언덕이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교내에 가파른 경사도로와 계단들이 많다. 또한 학교의 건물들도 대부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로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고 그나마 출입구도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먼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의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와 21조에서는 예서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쉬운 세면장·화장실 등의 설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시설 주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장차법 13조 3호), 제14조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생활 편의 보장은 학업의 서비스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내 이용불편 시설 모니터를 통한 관련부서 건의 및 해결, 보장구 대여 및 수리,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컴퓨터 기능 학습 지원, 기초학력증진 강좌 운영, 휠체어 장애인의 통학 편의를 위한 등하교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교수-학습 지원

교수-학습 장면에서 교사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수업'과 '과제',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업을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료 접근 및 수집 방법이 단순하지 않으며, 단일한 평가수단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실험·실습'이나 '견학'도 문제일 수 있다. 장애 영역과 정도, 특성에 따라 개별화 교육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개별화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영역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자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보급 및 학교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학교 장애인에게 학내 이동 및 교사·학습 보조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여 교육권 보장과 고학력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008년 기준 2,000명의 도우미 지원이 이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는, ①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②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③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④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의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한 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는 개인별 수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수행전략이나 자료의 종류, 수집방법,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과제 작성 매뉴얼」을 제시하고, 매뉴얼은 과제를 하는 방법과 분량, 작성 방법, 자료 찾는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과제수행을 위해 기존의 각종 녹음 및 점역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내용을 문서파일로 보관하여 언제나 검색하여 활용토록 하며, 음성변환 사용과 웹 사이트의 음성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및 점자 노트북), 점자 프린터를 비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들에게 인터넷 자료 검색, 도서관의 책이나 문헌 찾기, 자료복사, 도서대출 등을 도우미를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장애인들의 시험 및 평가에 있어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의 성적 비중을 낮추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즉, 평소 과제수행과 수업 참여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 고른 비중을 두으로써 장애인들이 시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도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에 좀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교사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아동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즉 장애인들도 다른 아동과 동일한 교육적 기준이 적용 받는다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장애영역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3) 교육환경 지원

교육환경 지원에 있어 장애인이 필요시 이동이나 일상생활, 학습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원이 지원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 내 장애인들이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생활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

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기응변적이거나 단속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보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와 같은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도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이동과 학습보조, 보상기자재 활용지원, 여가생활, 진로와 관련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원은 장애인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교수-학습 지원 분야에서는 수화, 대필, 녹음, 점역, 속기 등의 지원, 학습보상기자재(노트북, 브레일 라이트, 확대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하다.

보조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학교 내외의 이동과 접근 편의(교통수단), 개인용무 처리, 의료, 보장구 수리, 대여 및 구입 알선, 개인위생 지원, 개인후원 알선 및 관리, 자원봉사 수급 및 지원, 각종 생활 불편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조원의 역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보조원의 역할의 관한 연구와 보조원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4) 취업 및 진로 지원

졸업을 앞둔 장애인들을 위해 학교는 장애인지원전담기구를 활용하여 장애 인력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체, 기업의 취업 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정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등에서 장애인 취업과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업하여 취업 직종을 찾고 개발하여 취업 준비를 시키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는 장애인 진로 지원 전담기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도,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5) 장애대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에서 장애인 선발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정착을 위해 첫째,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개선 이 필요하고, 둘째, 장애인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편의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고, 셋째, 장애학생들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인력보강 및 보조공학 자료 확대 배치 및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넷째,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 및 보급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 확대, 이외에도 점자도서관 운영, 교내에 상시적으로 문자게시판 운영,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넷째, 장애학생들에게 도우미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도우미 교육 및 도우미 수당 인

상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 대학생의 통합교육이 활성화와 고등교육의 전달체계가 다양화 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책무성을 가지고 장애대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 고등교육지원분과 신설’, 기본 지원 설비 확충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은 한 개인이나 대학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IV. 맺으며

장애인의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교육권의 정당성과 위험요인을 살펴본 후 장애인 교육권 위험요인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함이었으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은 무엇보다 의무가 아닌 권리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또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정당한 편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법으로서 끝이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또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지원, 직업교육, 평생교육, 평가방법 개선, 실제적 개별화교육 운영,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개선과 교육지원, 부모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 명시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피부에 닿는 교육지원 및 요건들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체제 요건을 규정하고 강제화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교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원만이 장애인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

넷째,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에서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개선에 의지와 책임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삶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책무성을 가지고 장애대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장애인 교육권의 정당성과 위험 요인을 문헌연구와 현장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의 위험 요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인터뷰 등 다양한 기초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 교육과학기술부. 2007.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종합 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5b.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보고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룡. 2007. 장애우 교육에 새로운 주춧돌이 될 「장애인교육법」. 함께걸음. 5월호, 서울.
- 김주영. 2003.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 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은주.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국립특수교육원.
- 박원희. 1999. 통합교육정상화를 위한 연구-특수학급 입학 대상자의 진단·평가과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8: 43-50.
- 사다토오 다케히로. 2002. 학교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고등교육관련 자료(61~79).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성낙인. 2008. 헌법학. 법문사.
- 이현수. 2009.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현황과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2(1): 92-107.
- 장애인교육권연대.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 최순영. 2006. 국회의원 국감 보도자료.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11년, 변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교육차별". 2006년 10월 25일.
- 황원영. 2003 비판적 교육과학. 서울: 학지사.
- Degener, Theresia. 1995. Disability Persons and Human Right: The Legal Framework, in *Human Right and Disabled Persons*, Theresia Degener and Yolán Koster-Dreese(E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London)
- John, Colbeck. 2001. *Children's Right in Education(In England)*.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0.

Yell, M. L. 1998.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에이블뉴스. <http://ablenews.co.kr>.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http://www.eduright.or.kr>.

---

**李炫洙**: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실행 모형 개발 연구(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관심분야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 교육 등이다. 주요 논문 및 연구로는 “발화속도와 독화의 상관연구”,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청각장애학교유치부 교육과정 개발방안”,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현황과 개선방안” 외 다수가 있으며, 주요저서는 교육실습의 탐구(양서원),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최신특수학교 교육과정(인포럼), 장애 아동부모교육(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외 다수가 있다 (mil37@youngdong.ac.kr).

투 고 일: 2010년 8월 17일

수 정 일: 2010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31일